

# 실비보상규정

제정 2012. 09. 27.

개정 2014. 10. 21.

개정 2017. 06. 13.

개정 2018. 01.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 이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직장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인사(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위원에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당 등)** 융합원 소속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융합원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이사 및 감사 및 총회 회원, 운영위원회 위원
2. 각종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3. 직원 교육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
4.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현장지원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5. 기타 융합원 사업계획 실현을 위한 시책 참여자

**제4조(여비)** ① 위원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 30조에 의거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당에 여비를 포함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를 소속 기관의 직급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 할 수 있다.

## 부 칙(2012.09.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0.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비보상기준

### 실비보상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1. 이사회 참석수당	200,000원	
2.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3. 외부전문가 등	100,000원	

※ 단,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2회 차에서부터 규정액의 5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강사료 지급기준

###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원고료	원고지 1매(200자)	5,000원 이하		
	PPT 1매	10,000원 이하		
	A4 용지 1매(80칸, 25줄)	20,000원 이하		
강사료 (1시간 기준)	1급	기관장, 저명인사		2,000,000원 이하
	2급	책임급		200,000원 이하
	3급	선임급		150,000원 이하
	4급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100,000원 이하
평가 수당	1일 4시간 이상	300,000원 이하		
	1일 4시간 미만	200,000원 이하		
	위원장 수당(1일 기준)	40,000원 이하		
자문료	1일 기준	250,000원 이하		
여비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않는 경우 (1일 기준)	100,000원 이하		